

[별지 제38호서식]<개정 1987.12.11>

정 기 검 사 불 수 검 신 고 서 (제49조제1항 관련)

정 기 검 사 불 수 검 신 고 서				처리기간
① 성 명				
② 주 소			③ 상 호	
④ 정 기 검 사 를 받을수없는계량기	종 류	형식또는능력	수 량	적 요
⑤ 정 기 검 사 를 받을수없는 사유				
⑥ 정기검사에 대체되는 검사를 희망하는기일				
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의 계량기에 관하여 계량법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성명 (인) 시 · 도 지 사 귀 하				
구비서류				수 수 료
				없 음

4203-72B

1981.3.30 승인

190mm×268mm

(신문용지 54g/m²)